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87
------------	-------

제출년월일 : 2011. 11.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 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 근거조항이 같은 법 제4조제6항에서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시 1년 감소된 통장의 정년을 기준으로 복귀
- 다.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의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방문 활동을 명확히 하여 지역복지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임무) 제1항제9호 조문 개정
- 라. 현행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 등 구독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편의제공 등)제2항 신설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근거 법령 개정(안 제1조)
 - 1)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개정.
- 나. 통장 정년 조문 정정(안 제4조제2항)
 - 1)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제5조제2항의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로 한다.
- 다. 임무 일부 변경(안 제7조제1항제9호)

1) 제7조제1항제9호중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협조”를 “저소득층 지원사업 협조”로 변경

라. 편의제공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1) 제10조제2항에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잡지 등 구독을 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

마. 알기 쉬운 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1. 10. 13. ~ 2011. 11. 2.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1.11.10)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제5조제2항의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구역내에”를 “구역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의거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할구역내에”를 “관할 구역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같은 항 제4호 중 “심신장애등”을 “심신장애 등”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발생 시”를 “발생 시”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협조”를 “저소득층 지원 사업 협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내에”를 “반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월1회”를 “월 1회”로,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한다.

제9조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직무수행시”를 “직무수행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잡지 등 구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의2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 의2제6항에 따라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 ----- --.</p>
<p>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 -----.</p>
<p>제4조(통장의임기) ① (생 략) ② 임기 중에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하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 재임한다. ③ (생 략)</p>	<p>제4조(통장의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제5조제2항의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위촉</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구역 내에-----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p>

현 행	개 정 안
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에 의거 당해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따라 해당-----.
⑤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된 해당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	⑤ ----- 해당 ----- 관할 구역 내에 ----- ----- ----- ----- ----- -----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구청장이, 해당 반장은 동장이 <u>지체없이</u> 해촉하여야 한다.	⑥ ----- ----- -----지체 없이 ----- -----.
1. ~ 3. (생략) 4. <u>심신장애등</u>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략)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4. <u>심신장애 등</u> -----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u>아래</u> 임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u>발생시</u> 초동 조사 협조 8. (생 략) 9. 지역청소 업무 및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 협조 10.~13. (생 략) 14.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7조(임무) ① ----- ---- 다음 각 호의 -----. 1. ~ 6. (현행과 같음) 7. ----- <u>발생 시</u> ----- ----- 8. (현행과 같음) 9. ----- <u>저소득층 지원 사업 협조</u> 10.~13. (현행과 같음) 14. ----- <u>따라</u> ----- <u>그 밖에</u>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	제8조(반상회) ① ----- 반 내에-----

현 행	개 정 안
<p>는 성년자인 세대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월 1회 ----- 필요 시 ----- -----.</p>
<p>제9조(통·반장회의) 통·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9조(통·반장 회의) ----- 월 1회 ----- ----- ----- -----. -----.</p>
<p>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신 설></p>	<p>제10조(편의제공 등) ① ----- ----- ----- ----- 직무수행 시 ----- -----.</p> <p>②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잡지 등 구독을 지원 할 수 있다.</p>
<p>제10조의2(통·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통·반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p>	<p>제10조의2(통·반장 교육) ----- ----- ----- ----- 범위 에서----- ----- -----.</p>
<p>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p>	<p>제11조(실비수당 등) ① -----</p>

현 행	개 정 안
<p>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범위에서----- -----.</p> <p>② ----- 범위에서 ----- -----.</p>